대구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실습과목 안내사항

1. 총괄표

구분	사회복지현장실습	보육실습	평생교육실습
모집기간	2018.01.15.(월)~02.14(수)	2018.01.15.(월)~02.14(수)	2018.01.15.(월)~02.14(수)
접수 및 상담	평일 09:00~15:00 (점심시간12:00~13:00제외) 서류만 제출 시 평일 21:00 까지 가능(단, 금요일 17:00 까지)	평일 09:00~15:00 (점심시간12:00~13:00제외) 서류만 제출 시 평일 21:00 까지 가능(단, 금요일 17:00 까지)	평일 09:00~15:00 (점심시간12:00~13:00제외) 서류만 제출 시 평일 21:00 까지 가능(단, 금요일 17:00 까지)
모집인원	80명	80명	80명
모집지역	대구지역	대구지역	대구 및 경북권 일부 (2시간 거리 이내)
수강료	27만원	27만원	27만원
수업일자	- 2018.03.08.(목) - 2018.03.15.(목) - 2018.03.22.(목) - 2018.04.26.(목) - 2018.05.31.(목)	- 2018.03.06.(화) - 2018.03.13.(화) - 2018.03.20.(화) - 2018.05.29.(화) - 2018.06.05.(화)	- 2018.03.06.(화) - 2018.03.20.(화) - 2018.04.10.(화) - 2018.05.01.(화) - 2018.05.29.(화)
수업시간	18:30~21:30 (1일3시간)	18:30~21:30 (1일3시간)	19:00~22:00 (1일3시간)
출석평가 기준	총 5회 수업 중 4회 이상 출석(80% 이상 출석)	총 5회 수업 중 4회 이상 출석(80% 이상 출석)	총 5회 수업 중 4회 이상 출석(80% 이상 출석)
선수과목	총 6개 과목 이상 이수 - 필수과목 4개 이상 - 선택과목 2개 이상	총 5개 과목 이상 이수 (2018학년부터 적용)	총 4개 과목 이상 이수 - 필수과목 4개 과목 이상
접수서류	- 수강신청서 - 개인정보동의서 - 성적확인서	- 수강신청서 - 보육실습동의서 - 개인정보동의서 - 성적확인서	- 수강신청서 - 개인정보동의서 - 성적확인서
실습지	수강 신청 전 개인별 선정	수강 신청 전 개인별 선정	수강 신청 전 개인별 선정
실습기간	2018.03.12.(월)~05.25(금)	2018.03.12.(월)~05.25(금)	2018.03.12.(월)~05.25(금)
실습시간	120시간	240시간	160시간

2. 사회복지현장실습

1) 신청 자격

- 가, 실습 선수과목 이수 (수강중이거나 미 이수한 학생은 수강신청 불가)
- 1) **필수과목 4개 과목 이상 이수** 사회복지개론, 사회복지법제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인간행동과사회 환경, 지역사회복지론
- 2) 선택과목 2개 과목 이상 이수 사회복지윤리와철학, 가족복지론, 사회복지발달사, 프로그램개발과평가, 아동복지론, 청소년복지론, 학교사회사업론, 노인복지론, 장애인복지론, 의료사회사업론, 여성복지론, 산업복지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정신건강론, 교정복지론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사회보장론, 사회문제론, 정신보건사회복지론, 자원봉사론

2) 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

가. 실습기관 선정

- 1)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·시설,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하여야 함
- 2)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(실습기관, 실습지도자) 시행(2014.1)에 따라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(http://lic.welfare.net) 내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 기관 검색을 통해 등록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확인
- 3) 실습지도교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
- 4) 실습기관은 대구지역만 가능 함
- 5) 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, 1일 기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해야 함(실습이수시간 중 아침·점심·저녁 식사시간은 제외)
- 6) 실습기간 및 일정은 중도 변경이 불가 함(지도교수 현장 점검)
- 7) 본인 근무지 기관에서는 실습불가

3) 실습 의뢰

- 가. 협약 실습기관 또는 실습생이 직접 섭외한 실습기관에 실습협조를 구하여야 함
- 나. 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배정하고,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(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, 상근임을 증명하여야 함)
- 다. 실습지도비는 개인이 직접 기관에 전달함

3. 보육실습

1) 신청 자격

- 가. 실습 선수과목 이수 조건
- 1) 5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 (전체 과목은 수강신청서 확인 바람)
- 2) 2014년 2월 28일까지 아동발달을 이수한 경우 아동발달은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로 인정되므로, 아동발달 1개 교과목과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 중 1개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
- 나. 실습시간 이수기준 : 6주 240시간 실습기준 적용
- ※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(2016.1.12. 공포, 보건복지부령 제392호)관련으로 우리기관에서는 실습시간 기준을 6주 240시간으로 시행함

2) 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

- 가. 실습기관 선정
- 1) 실습기관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(보육)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야 함.
- 2) 반드시 평가인증기관 이어야 함.
- 3) 실습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함. (단, 보육정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원장이 담임을 맡고 있을 경우 실습지도 가능)
- 4) 보육실습 기관은 <mark>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</mark> (http://daegu.childcare.go.kr/ccef/main.jsp) 내 어린이집검색을 통해 등록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확인
- 5) 실습기관은 <u>대구지역만 가능</u> 함.
- 6) 실습기간은 6주(240시간)로 하며 1일 8시간 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7시 사이에 한 경우만 인정 함
- 7) 6주 실습은 분할 실습 가능 함(4주 연속+2주 연속)
- 8) 4대 보험가입자는 퇴사 또는 휴직 처리 후 실습가능 하며 휴직해당자는 휴직증명서를 첨부해야함
- 9) 본인 근무지 기관에서는 실습 불가
- 10) 실습 지도자 1인당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 하여야 함
- 11) 실습기간 및 일정은 중도 변경이 불가 함(지도교수 현장 점검)
- 12) 본인 근무지 기관에서는 실습불가

3) 실습 의뢰

- 가. 협약 실습기관 또는 실습생이 직접 섭외한 실습기관에 실습협조를 구하여야 함
- 나. 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함
- 다. 실습지도비는 평생교육원으로 납부 후 평생교육원에서 기관에 전달함

4. 평생교육실습

1) 신청 자격

- 가. 실습 선수과목 이수(수강중이거나 미 이수한 학생은 수강신청 불가)
- 1) 필수과목 4과목(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)을 선수과목으로 이수

2) 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

- 가. 실습기관 선정
- 1) 실습기관은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에 따라 설치한 신고(등록)여부를 확인 후 실습기관으로 선정하여 야 함.
- 2) 실습지도자는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팀장급이상 또는 실무경험 2년이상의 직원이어야 함
 - 3) 실습기관은 대구지역 및 경북지역 가능 함.
 - ※ 왕복거리 2시간까지 가능
 - 4) 현장실습기간은 최소 4주간(최소 20일 이상)총 160시간 이상이어야 함
 - ※ 실습은 1일 8시간(09:00~18:00), 주 5회(월~금)실습
 - 5)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(재직기관)에서 실습이 가능하나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간 또는 주말에 실습을 할 경우 해당시간에 개설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
 - 6) 실습 지도자 1인당 실습생 5명 이내로 지도 하여야 함
 - 7) 실습기간 및 일정은 중도 변경이 불가 함(지도교수 현장 점검)

3) 실습 의뢰

- 가. 협약 실습기관 또는 실습생이 직접 섭외한 실습기관에 실습협조를 구하여야 함
- 나. 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함
- 다. 실습지도비는 개인이 직접 기관에 전달함